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인표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5347 |
|----------|------|

발의년월일 : 2018. 2. .
발 의 의 원 : 홍인표 의원
김지만 의원
김원규 의원
이진련 의원
이태손 의원
하병문 의원
윤영애 의원
(외 찬성의원 인)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적용 대상 범위와 용어를 정비함. (안 제2조, 안 제3조)
- 나. 원인자·손상자부담금 사항을 신설함. (안 제4조의2)
- 다. 가로수의 식재·관리 부문과 녹화기금 부문을 삭제함.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공동주택 단지의 조경시설, 녹수대 및 가로수 등에 대하여”를 “공동주택 단지의 조경시설, 녹수대 등에 대하여”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조경시설과 가로수”를 “조경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는 삭제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원인자·손상자부담금등) 관리청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쳐 조경수목과 조경시설물 등에 관한 옮겨심기·이설 또는 제거할 경우와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20조, 제21조를 준용한다.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삭제한다.

제21조제3항과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삭제한다.

제32조의 “가로수등의 관리대장”을 “관리대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호수·가로수·조경시설 등”을 “보호수·조경시설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의 조경시설, 공동주택 단지의 조경시설, <u>녹수대 및 가로수 등에</u> 대하여 적용한다.</p> | <p>제2조(적용범위) ----- ----- ----- ----- <u>녹수대 등에</u> ----- -----.</p> |
|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관리청"이란 <u>조경시설과 가로수</u>의 경우에는 구청장·군수 및 사업소장을 말하고, 보호수의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p> <p>3.4. (생략)</p> <p>5. "가로수"란 <u>도시녹화·경관조성·공해방지 및 시민보건향상 등을 위하여 가로·노변 또는 분리대 등에</u> <u>조화있게 심은 나무를</u> 말한다.</p> | <p>제3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조경시설의</u> ----- ----- ----- -----.</p> <p>3.4. (현행과 같음)</p> <p><삭제></p> |
| <p><신설></p> | <p>제4조의2(원인자·손상자부담금등) <u>관리청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쳐 조경수목과 조경시설물 등에 관한 옮겨심기·이설 또는 제거할 경우와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20조, 제21조를 준용한다.</u></p> |

| | |
|---|--------------------|
| <p>제11조(가로수 식재·관리) ① 관리청은 가로수를 계획적으로 심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p> <p>② 관리청이 일반국도, 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 포함), 광역시도와 공원 및 사적지 등 주요 가로의 가로수 수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p> <p>③ 관리청 외의 자가 가로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2. 가로수의 제거, 가지치기 등 <p>④ 관리청 외의 자가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관리청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조례, 가로수의 조성·관리계획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용을 보완하여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관리청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⑥ 가로수 크기는 가슴높이지름 8cm 이상 또는 근원지름 10c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식재공간협소 등 현장여건상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p> | <p><삭 제></p> |
|---|--------------------|

| | |
|--|--------------------|
| <p>제13조(시민관리제 실시) ① 관리청은 가로수를 유지·관리함에 있어 인근 공공기관·학교·단체·기업체·상가·주민 등이 가로수에 대한 애호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물주기, 병충해 발생신고, 방제2. 가로수에 피해가 되는 장애물 제거3. 사고·재해 등으로 가로수가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관리청에 신고 <p>② 모든 시민은 가로수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고, 관리청의 가로수 유지 관리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p> | <p><삭 제></p> |
| <p>제14조(관리위탁) 관리청은 가로수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기타 공법인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p> | <p><삭 제></p> |
| <p>제15조(손상자부담금등) ① 관리청은 고의 또는 과실로 가로수 또는 그 보호시설물을 손상한 자에게는 손상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손상자가 원상복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 <p><삭 제></p> |

| | |
|---|---|
| <p>② 관리청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쳐 가로수와 그 관리시설물을 옮겨심기·이설 또는 제거할 경우에는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상자부담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p> <p>④ 관리청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p> <p>⑤ 가로수 외의 조경수목 등에 대해서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 <p><삭 제></p> |
| <p>제21조(설치 및 기능)</p> <p>①·② (생략)</p> <p>③ 위원회는 대구광역시녹화기금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금사업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계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p>④ (생략)</p> | <p>제21조(설치 및 기능)</p> <p>①·②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④ (현행과 같음)</p> |
| <p>제27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도시 녹화·대체녹지조성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녹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p> | <p><삭 제></p> |

| | |
|--|--------------------|
| <p>제28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기금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이익금3. 기타 수입금 <p>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p> | <p><삭 제></p> |
| <p>제29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녹화기금계좌로 관리하되 시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② 기금은 적립금의 범위에서 사용하되,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p> | <p><삭 제></p> |
| <p>제3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의 사업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에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녹지의 조성 및 녹화사업 추진2. 녹화사업 추진에 따른 조사·연구·용역3. 산불피해지 복구4. 기타 녹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p><삭 제></p> |

| | |
|---|--|
| <p>제31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p> <p>1. 기금운용관 - 녹지업무담당국장</p> <p>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사무관</p> | <p><삭 제></p> |
| <p>제32조 (가로수등의 관리대장)</p> <p>① 관리청은 <u>보호수·가로수·조경시설 등의 관리대장</u>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 <p>제32조 (관리대장 등)</p> <p>① ----<u>보호수·조경시설 등의</u> ---- ----- ----</p> <p>② (현행과 같음)</p> |